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금융기관)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충청북도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한도, 특별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9. 전입기업
10. 수출 관련기업
11. 소재·부품 생산기업
12.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3. 명절·재해 자금 등

14. 기타 지원기업
15. 경기부진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지원대상업체중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충북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1.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추천기업중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고용우수기업”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중 (재)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충청북도 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3.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중 충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점지원사업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4.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전입기업중 타 지역으로 부터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으로 <별표1-1> 영위기업
5. 제4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소재·부품 생산기업
6. 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대배정가능액”이라 한다)을 배정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

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충북본부장(이하 “충북본부장”이라 한다)이 전략지원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취급계획 등을 감안 분기별로 사전 부여한 한도(이하 “사전한도”라 한다)를 소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을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절차를 거친 후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8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6조(전략지원부문 사전한도부여) ① 사전한도를 부여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1·4·7·10월 5일까지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계획 보

고서" <별지 제1호 서식>를 한국은행 충북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별표2>에 의거 정책호응도를 평가하여 매년 1·4·7·10월 15일까지 사전한도를 부여한다.

③ 분기별 대출실적을 확인하여 부여된 사전한도를 미소진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미소진분의 100% 해당액을 2분기후 사전한도 부여시 차감하며 해당 미소진분은 사전한도 미소진 금융기관을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에 재배정한다. 다만, <별표2>에 의거 A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추가로 부여된 사전한도(대출취급 계획금액의 10%) 중 미소진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7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 부문으로 지정하며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별표3>에서 정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성중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 <별표3>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최종 배정월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8조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7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최대배정가능액을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다만 동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대출 취급실적은 2배로 인정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신용대출 인정여부는 대출 건별로 정한다.

1. 전액을 담보나 보증 없이 취급한 순수신용대출
2. 동업자 보증대출
3. 인적 보증대출

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7조 제5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9조(지원일몰제도) ①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시설자금은 3년)이내로 하되,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 1년 이내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④ 충북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명절·재해자금 및 특별지원자금) 충북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3호(명절·재해자금) 및 제14호(특별지원자금)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대출금 중복분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4>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2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중복분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중복분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중복분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한국은행 중복분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3. 한국은행 중복분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4. 한국은행 중복분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5.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중복분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중복분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2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4조(제재) ① 중복분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중복분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2.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도 감축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우선지원부문 해당업체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 취급분도 이 기준에 의해 한도를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년 6월 우선한도배정 신청 시에 한하여 우선한도배정신청서상 “전월말 실적”은 각 금융기관이 2005년 5월한도로 기 신청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월중 변동내역”은 2005년 5월 우선한도 신청이후 당해월에 신규취급한 대출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 한도배정시(금융기관대출실적은 2005.8월말 기준)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1>

이 기준은 2007년 1월 한도배정시(금융기관대출실적은 2006.11월말 기준)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전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선한도 대상은 만기까지 우선지원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부 칙 <2007. 7.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도배정은 2007년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2008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2010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배정대상 대출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1. 10. 14>

이 기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2012년 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4. 30>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중복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3. 7. 24>

이 기준은 2013년 10월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도배정시(금융기관의 2013년 8월 중 취급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대출은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15. 4.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6. 29.>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이 기준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8.>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0.>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3.>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전산 코드	지 원 부 문	선 정 기 준 ¹⁾
A1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해당기업중 창업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별표 1-1> 업종 영위기업
A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
A3	혁신기업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INNO-Biz" 기업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MAIN-Biz" 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 인증서를 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선정한 "Kibo-A+멤버스" 및 "우량기술기업" - 신용보증 기금이 선정한 "스타기업" - 생산활동에 사용 중인 국내 특허 보유기업 - 신기술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받은 기업 - 국가기술표준원이 선정한 "품질경쟁력우수",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인증) 기업 - 기술평가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대출금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별지 제6호 서식>한 경우) -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참여기업 - 보유 또는 사용중인 기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기업
A4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거 환경성적표지인증 받은 기업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한 "GR마크"(Good Recycled product, 우수재활제품 품질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식약청 등이 선정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Green-Biz" 기업

전산 코드	지 원 부 문	선 정 기 준 ¹⁾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손익계산서의 경상개발비. 연구비, 개발비상각액+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A6	추천기업	-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고용우수기업” -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 충북지역 소재 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충북IP스타기업 및 충북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충청북도에서 선정한 예비사회적기업
A7	지역특화 산업 영위기업	-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향토기업” 및 “품질경영우수기업” - 충청북도 대표산업 중 (재)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충청북도 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A8	지역전략 산업 영위기업	- 충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점지원사업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우수바이오제품품질인증” 기업
A9	전입기업	- 국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입주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별표 1-1> 업종 영위 기업 - 타 지역으로부터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별표 1-1> 업종 영위 기업
A10	수출관련 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부품·소재전문기업
A13	농림 수산업 관련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 법인
A14	명절제해 자금 등	- 설, 추석 등 자금성수기에 본부장이 특별운전자금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 수재, 화재 등의 재해 및 노사분규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부장이 특별자금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 충북지역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또는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금융지원상담창구 등을 통해 자금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중 본부장이 자금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기업
A16	경기부진 업종	(삭제)

-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선정일(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
-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1-1>

지원대상업종 분류기준

구 분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 10차)	업 종
농림어업	A01~A03	업종제한 없음
제조업	C10~C34	업종제한 없음
건설업	F41~F42	업종제한 없음
운수 및 창고업	H49~H52	H49211(도시철도 운송업)과 H4923(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을 제외한 업종
정보통신업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0221	프로그램 공급업
	J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관광 관련업	I551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단, 해당 업종 영위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야 함)
	I561	음식점업(단, 해당 업종 영위가 지역 관광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M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단, 해당 업종 영위가 지역 관광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단, 해당 업종 영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야 함)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M70	연구개발업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M71400	시장조사업(여론조사업 제외)
	M71531	경영컨설팅업
	M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N75994	포장 및 충전업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전한도 부여 기준

1. 정책호응도 평가에 따라 등급부여

- 대출금리 운용현황(50점) 및 업무협조도(50점) 평가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A, B, C등급을 부여
- 정책호응도 평가등급별 금융기관의 비중은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30%로 설정

2. 세부 평가방법

- (1) 대출금리 운용현황
 -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최근 3개월 신규대출 취급실적의 가중평균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순서부터(최고 50점) 순위 간 5점씩 차등을 두어 배정하되 11위 이후 순위는 0점을 부여
- (2) 업무협조도
 - 최근 3개월간의 업무협조상황(당행 회의참석, 보고서 제출기일 준수, 위규 및 오류 건수, 업무협조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여
 -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부터(최고 50점) 순위 간 5점씩 차등을 두어 배정하되 11위 이후 순위는 0점을 부여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방법
회의 참석	10점 (여신 5, 금융조사 5)	- 금융기관의 당행 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산정 ¹⁾
보고서 제출기한	10점 (여신 5, 금융조사 5)	- 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일수에 대하여 일정점수 차감 ²⁾
위규 및 오류	10점 (여신 5, 국고 5)	- 위규 및 오류 건수에 대하여 일정 점수 차감 ³⁾
업무 협조	20점 (여신 10, 금융조사 10)	- 보고서의 정확성, 협조요청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계	50점	

주 : 1) 참석서 5점을 부여하고 불참서 2.5점을 부여하되 2회연속 불참시 0점 부여
 2) 보고서 제출지연 일수 당 일정점수(0.5점) 차감
 3) 위규 및 오류 건수 당 일정점수(각 1.5점 및 1.0점 차감)

3. 평가등급별 사전한도 부여

- 정책호응도 평가등급별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대출계획에 대해 50%를 사전한도로 부여
- 관할지역내 은행별 대출취급 예정규모를 합산한 결과가 사전한도 운용규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별로 비례배분

정책호응도 평가등급별 사전한도

등급	등급별 비중	대출취급계획 인정비율	사전한도 부여
A	30%	110%	당초 대출취급 계획의 55% 해당액
B	40%	100%	당초 대출취급 계획의 50% 해당액
C	30%	90%	당초 대출취급 계획의 45% 해당액

<별표3>

금융기관별 지원제외 대상 신용등급¹⁾

금융기관명	지원제외 대상 신용등급
우 리	A+ 이상
S C	5B 이상
신 한	A+ 이상
KEB하나	A6 이상
씨 티	3- 이상
국 민	BBB+ 이상
기 업	A- 이상
농 협	3B 이상
수 협	3 이상
산 업	A- 이상
대 구	3 이상
부 산	A 이상
광 주	A+ 이상
제 주	A+ 이상
전 북	3- 이상
경 남	A- 이상

주 : 1) 기업여신 신용등급 기준

<별표4>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 종 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6213 생맥주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분기별 사전한도 부여 일정표

분기	금융기관		지역본부	
	대출 취급계획 보고서 제출시기	대출 취급시기	사전한도 부여시기	배정일
1/4분기	10.5일	11월, 12월, 1월	10.15일	1월, 2월, 3월
2/4분기	1.5일	2월, 3월, 4월	1.15일	4월, 5월, 6월
3/4분기	4.5일	5월, 6월, 7월	4.15일	7월, 8월, 9월
4/4분기	7.5일	8월, 9월, 10월	7.15일	10월, 11월, 12월

주 : 1) 제6조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사전한도 미소진분 차감은 2분기후 사전한도 부여시 이루어짐

(예) 1/4분기 사전한도 미소진분(금융기관 대출취급 11월, 12월, 1월)은 3/4분기 사전한도 부여시기인 4월에 「3/4분기 금융기관별 사전한도」 부여시 차감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년 월 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I. 신청내용

대출취급액	백만원	대출기간	~
금리	고정 : %	대출계좌번호	
	변동 : %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자금종류	<input type="checkbox"/> 운전자금 <input type="checkbox"/> 시설자금
채권보전형태	<input type="checkbox"/> 순수신용 <input type="checkbox"/> 담보 <input type="checkbox"/> 보증기관 보증 <input type="checkbox"/> 혼합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대환 <input type="checkbox"/> 만기연장 <input type="checkbox"/> 지원연장
지원부문	△△△△ (신청 전산코드 :)	전략지원부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취급점 및 담당자	OO지점, OOO (☎ , FAX)	특별지원부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I.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확인	(인)
주소		(☎ , FAX)	
자금담당자		e-mail	
업종명 (KSIC 5자리코드)	△△△△ (□□□□□)	신용등급 (은행자체 등급)	
자금용도		설립일	
주 생산품		사업자등록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법인등록번호	
매출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총 자산	백만원	(납입자본금)	(백만원)

III. 첨부서류

1. 대출금원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1부
4.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한 서류. 끝.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변동전보고내역							변동보고내역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¹⁾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금 구분	취급 점포명	변동전 잔액	변동 일련번호 ²⁾	변동 사유 ³⁾	변동사유 발생일 ⁴⁾	변동 처리일 ⁵⁾	변동 금액	변동후 잔액	비고

- 주: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휴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 기재
-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휴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기재)
-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재(예 :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만 기재)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귀하

아래 대출은 기술평가인증서를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 업체명 :
- 대 표 :
- 사업자번호 :
- 계좌번호 :
- 대출일 :
- 대출금액 :

년 월 일

은행(회) 부(점)장(인)